

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특허청 심사관 윤리강령

◇ 제·개정 이유

제정안은 특허청 심사관이 준수하여야할 핵심 가치와 직무상 윤리적 행동기준을 규정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적용범위 (안 제2조 적용범위)

- 강령의 적용범위를 특허청 소속 특허·실용신안·상표·디자인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관으로 규정

나. 심사관의 직무상 행동기준 규정 (안 제3조 ~ 제10조)

- 심사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할 것을 규정 (제3조)
- 심사관은 공정·청렴하여야하며, 직연(職緣)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을 것을 규정 (제4조)
- 심사관은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,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, 심사 관계인을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할 것을 규정 (제5조)
- 심사관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할 것을 규정 (제6조)

- 심사관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야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, 직무관련 사실이나 취득한 자료를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 (제7조)
- 심사관은 심사건의 관계인을 정해진 절차 및 장소 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으로 면담하거나 접촉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 (제8조)
- 심사관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특정 변리사 또는 특허 법률 사무소의 선임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지 않을 것을 규정 (제9조)
- 심사관은 직무성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, 기타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 (제10조)